창의융합교육센터운영규정 5-1-64

규정번호 5-1-64
제정일자 2021.9.13
최근개정 2025.3.31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창의융합교육센터(이하“센터”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센터는 명지전문대학 내에 둔다.

제3조(기능) 센터는 창의 융합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과/비교과 과정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기능을 한다.

제4조(직무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할 수 있다.

1.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개정 2023.06.19.)
2. 사업화 연계기술(R&BD) 개발 지원(개정 2023.06.19.)
3. 센터 교육시설 구축 및 관리(개정 2023.06.19.)
4. 센터 기자재 관리 및 운영(개정 2023.06.19.)
5. 창의 융합 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산업체와의 교류 협력(개정 2023.06.19.)
6.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계된 지원사항(개정 2023.06.19.)

제5조(조직과 임무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사업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센터에는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산학협력단장, 평생교육본부장을 당연직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(개정 2025.3.31.)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운영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(운영기준 및 지침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

로 정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 법령 및 우리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)

부 칙(직제규정) <2025.3.3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

<1> - <14> (생략)

<15> 창의융합교육센터운영규정(5-1-64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②항의 “평생교육원장”을 “평생교육본부장”으로 한다.

<16> - <17> (생략)